

보도일시 (인터넷) 2023. 4. 5.(수) 06:00,
(지면) 2023. 4. 5.(수) 석간

배포 2023. 4. 4.(화) 14:00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할 수 있게 개선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 작업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5일(수) 입법예고한다.

최근 로봇 기술 등의 발달로 해양오염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장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대체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해양환경방제업에 활발히 활용되기 어려웠다.

* 유회수기, 고압세척기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하는 장비, 선박 등

이에, 해양수산부는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에 필요한 성능을 충족할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불편했던 제도의 개선사항도 다수 반영되었다. 수협조합원이나 어촌계장이 아닌 어업인도 5년 이상의 어업경력을 보유한 경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 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는 요건 중 학력·자격 취득 시점 이전의 경력도 인정됨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효과적인 해양오염 예방·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3년 5월 15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9),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행록 (044-200-5280)
		담당자	사무관	이창민 (044-200-5289)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①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개선(안 별표 14)

-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은 유회수기 등 필수 장비별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로봇 등 다른 형태의 장비를 등록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이 부재

* 유회수기(20m³ 이상 회수/시간), 고압세척기(동작압력 150kg/cm² 이상, 1대), 예열기(5kW 이상 2대), 이송펌프(15kW 이상 1대) 등

- 신기술 적용 장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장비의 명칭, 형태와 관계 없이 등록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의 경우 관련 장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필요

⇒ 신청인이 보유한 로봇이나 복합장비 등이 장비 등록기준에 요구되는 성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②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 대상 확대(안 제77조의2)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대상 중 어업인의 경우 수협 조합원이거나 어촌계장인 자만 위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 해양환경의 훼손 및 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오염물질 해양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해안가 또는 해역에 방치된 폐기물 수거 등 업무 수행

- 어업경력이 풍부하고 해양환경관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협조합원, 어촌계장이 아니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활동 불가

⇒ 어업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해양환경교육을 이수한 자를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대상에 추가

③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자격기준 명확화(안 별표 29)

○ 자격기준 요건*인 학력과, 실무경력의 선·후 관계 필요 여부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규정

*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

** (해석1) 졸업 이후의 관련 분야 경력만 인정, (해석2) 졸업 전·후 관련 분야 경력을 모두 인정

- 방제 자재 등의 성능시험·검정 업무에 필요한 실무경력의 활용성은 전문지식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학력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인정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개정하고 학력과 경력을 각각의 요건으로 열거

④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수수료 인상(안 별표 32)

○ 현행 수수료 수준으로는 인력, 시험 장비 운용이 어려워 업무 대행 기관이 지정서를 반납(20.6.)하였으며 이후 대행기관 신청 기관 전무

- 이후 해경에서 직접 수행 중이나 업무 과중, 수수료 수입 이상의 지출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수수료 인상을 통한 업무대행기관 지정 필요

* 방제 자재 등 성능시험·검정 업무 수수료는 2010년 인상 이후 10년이 넘도록 동일

⇒ 시험 원가 분석* 및 관계자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수준으로 수수료 인상(기재부 물가정책과 협의 완료, '23.3.3.)

*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 성능시험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22.8~12월)

< 성능시험·검정 수수료 개정안 >

자재·약제의 종류	성능시험 수수료(평균 67.7%↑)			검정 수수료(30%↑)		
	현행	개정(안)	단위	현행	개정(안)	단위
해양유류오염 확산차단장치	232,000	440,100(89.7%↑)	원/1회	2,000	2,600(30%↑)	원/20m
유처리제	1,990,000	3,775,800(89.7%↑)	원/1회	2,000	2,600(30%↑)	원/18ℓ
유흡착제	413,000	783,400(89.7%↑)	원/1회	2,000	2,600(30%↑)	원/10kg
유겔화제	1,687,000	2,272,000(34.7%↑)	원/1회	2,000	2,600(30%↑)	원/10kg
생물정화제제	2,867,000	3,862,100(34.7%↑)	원/1회	2,000	2,600(30%↑)	원/18ℓ

④ 기타 운영상 발견된 미비사항 반영 등

- 인용 법률 명칭 변경 사항 반영,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위임사항 개정(시행령) 내용 반영을 위한 서식 개정 등 미비사항 개정
 - (영문병기) 외국적 선박의 오염사고 발생시 해양오염 방제조치 명령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 영문 병기(안 별지 19호의2 서식)
 - * 현행은 국문으로만 되어 있어 외국적 선박 오염사고 시 대리점에서 번역 후 전달
 - (IMO 양식 반영) IMO의 개정된(2013.7.1.,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양식에 맞춰 오염물질 분류 세분화*(안 별지 제39호 서식)
 - * (현행) 기름 및 폐기물 중심 구성 → (개정) 기름,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및 폐기물 3종 중심
 -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정보 제공 및 동의 항목 신설(안 별지 제43호, 제62호, 제66호의3, 제69호 서식)
 - *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신청서, 형식 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서
 - (서식 수신 및 발급 기관명 변경)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업무 권한의 해양경찰연구센터 위임에 따른 관련 서식의 수신자 및 발급자 명칭 개정(안 별지 제62호, 제64~제66호 서식)
 - (타법 개정사항 반영) 해역이용협의 대상 중,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변경('19.8.27.)된 사항 반영(안 제48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① 방제자재·약제의 성능 시험·검정 업무에 대한 위임 근거 신설(안 제94조)

-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대행기관*이 수익성 문제로 지정서를 반납('20.6.)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수행 중이나

* 법 제112조에 따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을 대행기관으로 지정

- 접수 및 증명서 발급은 해양경찰청, 시험·검정은 해양경찰연구센터(해경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비효율 발생

⇒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로 위임(대행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업무 비효율 해소

* 해양경찰연구센터는 대행기관 지정 요건(자격요건 4명 이상, 장비·실험실 보유) 이상의 인력, 장비를 갖추고(자격요건 6명, 모든 품목에 대한 장비·실험실 보유) 시험·검정업무 수행 가능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과 상충 내용 해소(안 제86조)

-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이나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은 공단의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고,

- 공공기관운영법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되,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 이사회 의결 후 별도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것으로 규정

⇒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법률간 통일성 제고